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13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4. 10.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624,1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24,12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10. 9. 7. B에게 4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3. 8. 21.,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43.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2. 12. 17.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는 2018. 10. 26.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각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A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33068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B은 A에게 14,624,125원 및 그 중 3,338,551원에 대한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3.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4. 16. 확정되었다.다. B의 아버지 H은 2014. 10. 25. 사망하였고, H의 재산인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에 관하여 B의 상속지분인 2/7임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 B의 어머니인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B은 대구지방법원 2020개회1606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0. 9.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3. 25. A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이송 전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7037호)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 2020개회1606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21. 3. 25. A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실, 이송 전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7037호)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지민